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민원조사기획과·민원갈등소통과”를 “민원조사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2호의4 중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을 “다수인”으로, “조사·처리 및 조정”을 “조사·처리”로 하며, 같은 항제12호의5 중 “제6항”을 “제7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갈등조정기획과, 경제민원갈등조정과, 사회민원갈등조정과, 민원갈등소통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인 관련 갈등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

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조정 사례의 관리·분석 및 자료의 발간
 5.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정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도로·교통·주택·도시·수자원·에너지·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재정·세무·금융 등 경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2. 제1호와 관련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및 중재·조정
 3. 제2호에 따른 중재·조정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⑤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국방·경찰·보훈·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통신·노동·교육·보건복지·여성·식품 등 사회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2. 제1호와 관련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및 중재·조정

3. 제2호에 따른 중재·조정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⑥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특이민원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3. 제2호와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상담 지원

4.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별표 1 중 총계 “495”를 “505”로, 일반직 계 “487”을 “497”로,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1”을 “39”로,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서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8”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

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46”을 “148”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을 “19”로,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을 “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98”을 “508”로, 일반직 계 “490”을 “500”으로,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1”을 “39”로,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8”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46”을 “148”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을 “19”로,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을 “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보호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집단갈등조정국장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집단갈등조정국 집단갈등조정기획과	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5. 집단갈등조정국 사회민원갈등조정과	2명 (4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집단갈등조정국 민원갈등소통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생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충처리국에 <u>민원조사기획과 · 민원갈등소통과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국방보훈민원과 · 경찰민원과 · 재정세무민원과 · 복지노동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주택건축민원과 ·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u>민원조사기획과</u> ----- ----- ----- ----- ----- ----- ----- -----.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2의3. (생략)	1. ~ 12의3. (현행과 같음)
12의4. <u>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u>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u>조사 · 처리 및 조정</u>	12의4. <u>다수인</u> ----- ----- <u>조사 · 처리</u>
12의5. 고충민원(제6항 각 호의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의5. ----- <u>제7조의2제6항</u>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⑥ <u>민원갈등소통과</u> 장은 다음 사	<u><삭 제></u>

항을 분장한다.

1.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
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
하는 민원(이하 “특이민원”이
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특이민원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3. 제2호와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상담 지원

4.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
· 상담 등 지원

⑦ ~ ⑮ (생략)

<신설>

⑥ ~ ⑭ (현행 제7항부터 제15
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
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갈등
조정기획과, 경제민원갈등조정
과, 사회민원갈등조정과, 민원
갈등소통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인 관련 갈등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조정 사례의 관리·분석 및 자료의 발간

5.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정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도로·교통·주택·도
시·수자원·에너지·산업·
농림·축산·해양·수산·재
정·세무·금융 등 경제 분야
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2. 제1호와 관련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및 중재·조정

3. 제2호에 따른 중재·조정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⑤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국방·경찰·보훈·문
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통
신·방송통신·노동·교육·
보건복지·여성·식품 등 사
회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자료의 수
집·관리 및 분석

2. 제1호와 관련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및 중재·조정

3. 제2호에 따른 중재·조정
이행실태 확인·점검

⑥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
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
하는 민원(이하 “특이민원”이
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특이민원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3. 제2호와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상담 지원

4.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신 · 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일반직	계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5</u> · ·	<u>158</u> · ·	+3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46</u> · ·	<u>148</u> · ·	+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 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17</u>	<u>19</u>	+2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u>6</u>	<u>7</u>	+1
·	·	·	
·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98</u>	• <u>508</u>	+10
•	•	•	
•	•	•	
일반직 계	<u>490</u>	<u>500</u>	+10
고위공무원단	<u>9</u>	<u>10</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3</u>	<u>16</u>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1</u>	<u>39</u>	-2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5</u> · ·	<u>158</u> · ·	+3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46</u> · ·	<u>148</u> · ·	+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 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 ·	<u>17</u> · · <u>6</u> · ·	<u>19</u> · · <u>7</u> · ·	+2 +1
---	--	--	-----------------------------